익산 대전환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익 산 시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582

제출년월일 : 2026. 8. 2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조성 규모(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5년도말 조 성 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비 고 (이월액)
		수 입 ⓑ	지 출 ⓒ			
합 계	**44,001,928**	**22,285,521**	**41,531,139**	**24,756,310**	**△19,245,6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606,953	113,836	4,113,836	9,606,953	△4,000,000	
재 난 관 리 기 금	5,361,272	2,518,766	2,258,651	5,621,387	260,115	
청 사 건 립 기 금	14,908,782	1,154,481	16,063,263	0	△14,908,782	
자 활 기 금	2,467,813	265,000	119,000	2,613,813	146,00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 원 기 금	3,274,591	91,023	90,023	3,275,591	1,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72,066	172,420	169,000	1,575,486	3,420	
식 품 진 흥 기 금	760,832	60,640	126,000	695,472	△65,360	
고 향 사 랑 기 금	1,051,108	2,005,000	2,172,000	884,108	△167,000	
폐 석 산 사 후 관 리 기 금	0	3,300,000	2,816,500	483,500	483,500	
투 자 진 흥 기 금	998,511	12,604,355	13,602,866	0	△998,511	

○ 세부내용 :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조성 규모 및 수입·지출계획(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목 차

총 괄 기 금 운 용 계 획	1
기 금 운 용 방 침	3
기 금 현 황	3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
기 금 조 성 규 모	5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7
청 사 건 립 기 금	11
고 향 사 랑 기 금	19
투 자 진 흥 기 금	27

총괄기금 운용계획

2026년 총괄기금운용계획

□ 기금 운용방침

○ 기금의 합목적적 운용을 통한 기금의 공공성 증진

○ 기금건전성 유지 및 기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기금 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10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시민안전과
청사건립기금	2014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익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도시전략사업과
자활기금	2000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 및 자활도모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복지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0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소자원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	미식위생과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폐석산사후관리기금	2025	폐석산 복구지 폐기물 및 침출수 사후관리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정책과
투자진흥기금	2019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함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과

□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51,087,449	9,122,023	6,546,839	0	200,000	4,000,000	24,801,928	0	381,193	6,035,4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20,789					4,000,000	6,953		113,836	
재난관리기금	7,880,038	1,843,000	535,000				5,361,272		140,766	
청사건립기금	16,063,263	1,100,000					14,908,782		54,058	423
자활기금	1,532,813				200,000		1,267,813		15,000	50,00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65,614	90,023					274,591		500	5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44,486	169,000					172,066		3,420	
식품진흥기금	821,472		26,640				760,832		19,000	15,000
고향사랑기금	3,056,108						1,051,108		5,000	2,000,000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3,300,000	920,000	2,380,000							
투자진흥기금	13,602,866	5,000,000	3,605,199				998,511		29,613	3,969,543

기금명	지출계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51,087,449	32,572,475	400,000	2,000	0	9,556,310	1,119,060	4,113,836	3,323,7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20,789					6,953		4,113,836	
재난관리기금	7,880,038	1,947,000	300,000			5,621,387			11,651
청사건립기금	16,063,263	14,942,203		2,000			1,119,060		
자활기금	1,532,813	19,000	100,000			1,413,813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65,614	90,023				275,59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44,486	169,000				175,486			
식품진흥기금	821,472	121,000				695,472			5,000
고향사랑기금	3,056,108	2,172,000				884,108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3,300,000	2,816,500				483,500			
투자진흥기금	13,602,866	10,295,749							3,307,117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5년도말 조 성 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증 감	'26년도말 조 성 액	비 고 (이월액)
		수 입 ⓑ	지 출 ⓒ	ⓓ=ⓑ-ⓒ	ⓔ=ⓓ+ⓐ	
합 계	**44,001,928**	**22,285,521**	**41,531,139**	**△19,245,618**	**24,756,3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606,953	113,836	4,113,836	△4,000,000	9,606,953	
재 난 관 리 기 금	5,361,272	2,518,766	2,258,651	260,115	5,621,387	
청 사 건 립 기 금	14,908,782	1,154,481	16,063,263	△14,908,782	0	
자 활 기 금	2,467,813	265,000	119,000	146,000	2,613,81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274,591	91,023	90,023	1,000	3,275,59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72,066	172,420	169,000	3,420	1,575,486	
식 품 진 흥 기 금	760,832	60,640	126,000	△65,360	695,472	
고 향 사 랑 기 금	1,051,108	2,005,000	2,172,000	△167,000	884,108	
폐 석 산 사 후 관 리 기 금	0	3,300,000	2,816,500	483,500	483,500	
투 자 진 흥 기 금	998,511	12,604,355	13,602,866	△998,511	0	

기금 운용계획

청 사 건 립 기 금

도시전략사업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청사가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 및 사무공간협소로 직원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 신청사 건립이 어려워 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⑶ 설치년도 : 2014년(조례재정 2014.10.30.)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⑵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본방향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 확보
- 중점추진과제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③ 기금운용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4,908,782	1,154,481	16,063,263	△14,908,782	0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	-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6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6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3)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4)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6,063,263**	**16,048,782**	**14,481**	**합 계**	**16,063,263**	**16,048,782**	**14,481**
전입금	1,100,000	1,1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14,942,203	15,301,782	△359,579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2,000	2,000	0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4,908,782	14,908,782	0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1,119,060	745,000	374,060
이자수입	54,058	40,000	14,058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423	0	423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200 세외수입	54,481	40,000	14,481
210 경상적세외수입	54,058	40,000	14,058
216 이자수입	54,058	40,000	14,05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4,058	40,000	14,058
◦공공예금이자수입	54,058	40,000	14,058
220 임시적세외수입	423	0	423
224 기타수입	423	0	423
224-07 그외수입	423	0	423
◦시설부담금 정산금	423	0	423
수 입 합 계	**16,063,263**	**16,048,782**	**14,481**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도시전략사업과	16,063,263	16,048,782	14,481
시민친화 청사건립	14,944,203	15,303,782	△359,579
청사건립기금(청사건립기금)	14,944,203	15,303,782	△359,579
신청사건립추진(기금)	14,944,203	15,303,782	△359,579
401 시설비및부대비	14,767,861	15,101,782	△333,921
01 시설비	13,197,435	13,531,282	△333,847
◦신청사 건립공사 등	13,197,435	13,531,282	△333,847
02 감리비	1,430,426	1,430,500	△74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430,426	1,430,500	△74
405 자산취득비	174,342	200,000	△25,658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342	200,000	△25,658
◦신청사 가구 등 구매	174,342	200,000	△25,658
재무활동	1,119,060	745,000	374,060
보전지출	1,119,060	745,000	374,060
보전지출	1,119,060	745,000	374,060
311 차입금 이자상환	1,119,060	745,000	374,060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119,060	745,000	374,060
◦주택도시기금 이자	1,119,060	745,000	374,060
지 출 합 계	**16,063,263**	**16,048,782**	**14,481**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차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2022년까지	89,149,287	48,400,000	40,000,000	749,287		19,701,434	19,599,746	0	101,688	69,447,853
2023년	7,109,599		5,700,000	1,409,599		29,682,434	28,951,760	3,366	727,308	△22,572,835
2024년	11,521,703	3,000,000	7,700,000	780,666	41,037	43,039,640	42,074,864	3,535	961,241	△31,517,937
2025년	10,796,903	10,500,000		289,754	7,149	11,245,202	10,173,953	3,345	1,067,904	△448,299
2026년	1,154,481	1,100,000		54,058	423	16,063,263	14,942,203	2,000	1,119,060	△14,908,782
계	**119,731,973**	**63,000,000**	**53,400,000**	**3,283,364**	**48,609**	**119,731,973**	**115,742,526**	**12,246**	**3,977,201**	**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5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6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4년도말 현재액	'25년도말 현재액ⓐ	'26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5,357,081	14,908,782	-	△14,908,782	
예치금	전북은행	15,357,081	14,908,782	-	△14,908,782	

※ 2024·202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6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고 향 사 랑 기 금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

(3) 설치년도 : 202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비
-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1) 익산시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2) 익산사랑 치유숲 조성사업
  3)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정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051,108	2,005,000	2,172,000	△167,000	884,108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84,108			884,108

(2) 재원조성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3) 지원기준 :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4) 지원대상 : 익산시민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3,056,108**	**2,654,108**	**402,000**	**합 계**	**3,056,108**	**2,654,108**	**402,000**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2,172,000	1,712,000	46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 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051,108	1,051,108	0	예치금	884,108	942,108	△58,000
예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000	3,000	2,000	전출금			
기타수입	2,000,000	1,600,000	400,0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행정지원과	**3,056,108**	**2,654,108**	**402,000**
200 세외수입	2,005,000	1,603,000	402,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0	3,000	2,000
216 이자수입	5,000	3,000	2,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3,000	2,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3,000	2,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000,000	1,600,000	400,000
224 기타수입	2,000,000	1,600,000	400,000
224-03 기부금수입	2,000,000	1,600,000	400,000
◦ 고향사랑기부금	1,908,588	1,600,000	308,588
◦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	41,412	0	41,412
◦ 여성1인 소상공인 점포 안전지원사업	50,000	0	50,000
수 입 합 계	**3,056,108**	**2,654,108**	**402,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행정지원과	**3,056,108**	**2,654,108**	**402,000**
열린시정구현	2,172,000	1,712,000	460,000
고향사랑기금 운영	2,172,000	1,712,000	460,000
고향사랑기금 운영	2,172,000	1,712,000	460,000
201 일반운영비	822,000	612,000	210,000
01 사무관리비	822,000	612,000	210,000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비	197,781	155,781	42,000
◦ 답례품 구입비	600,000	432,000	168,000
301 일반보전금	800,000	600,000	200,000
14 기타보상금	800,000	600,000	200,000
◦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800,000	600,000	200,000
307 민간이전	50,000	0	5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50,000
◦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	50,000	0	50,000
재무활동(행정지원과)	884,108	942,108	△58,000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884,108	942,108	△58,000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884,108	942,108	△58,000
602 예치금	884,108	942,108	△58,000
01 일반예치금	884,108	942,108	△58,000
◦ 예치금	884,108	942,108	△58,000
지 출 합 계	**3,056,108**	**2,654,108**	**402,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기타 지출	
2023년	495,157	495,000	157						495,157
2024년	301,079	295,259	5,820		156,896	156,896			144,183
2025년	1,111,512	567,975	3,443	540,094	699,744	699,744			411,768
2026년	2,005,000		5,000	2,000,000	2,172,000	2,172,000			△167,000
계	**3,912,748**	**1,358,234**	**14,420**	**2,540,094**	**3,028,640**	**3,028,640**			**884,108**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4년도말 현재액	'25년도말 현재액ⓐ	'26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639,340**	**1,051,108**	**884,108**	**△167,000**	
예치금	농협은행	639,340	1,051,108	884,108	△167,000	

※ 2024·202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6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투 자 진 흥 기 금

경 제 산 업 과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2) 설치목적 :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3) 설치년도 : 2019년(2018. 12. 28. 조례 개정)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

(2)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업의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시기 도래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기금운용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998,511	12,604,355	13,602,866	△998,511	0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0	0	0	0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6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6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2) 재원조성 : 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첨부참고

(4) 지원대상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익산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3,602,866**	**6,931,740**	**6,671,126**	**합 계**	**13,602,866**	**6,931,740**	**6,671,126**
전입금	5,000,000	4,000,000	1,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0,295,749	6,931,740	3,364,009
보조금	3,605,199	2,191,587	1,413,612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998,511	736,153	262,358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29,613	4,000	25,613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3,969,543	0	3,969,543	기타지출	3,307,117	0	3,307,117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경제산업과	13,602,866	6,931,740	6,671,126
200 세외수입	3,999,156	4,000	3,995,156
210 경상적세외수입	29,613	4,000	25,613
216 이자수입	29,613	4,000	25,61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9,613	4,000	25,613
◦ 공공예금이자수입	29,613	4,000	25,613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69,543	0	3,969,543
235 환수금	3,969,543	0	3,969,543
235-01 부정이익 환수금	3,969,543	0	3,969,543
◦ 부정이익 환수금	3,969,543	0	3,969,543
500 보조금	3,605,199	2,191,587	1,413,612
510 국고보조금등	3,281,334	1,983,210	1,298,124
511 국고보조금등	3,281,334	1,983,210	1,298,124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81,334	1,983,210	1,298,124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50,084	351,960	1,298,124
520 시・도비보조금등	323,865	208,377	115,488
521 시・도비보조금등	323,865	208,377	115,488
521-01 시・도비보조금등	323,865	208,377	115,488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0,740	45,252	115,488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98,511	4,736,153	1,262,358
710 보전수입 등	998,511	736,153	262,358
714 예치금 회수	998,511	736,153	262,358
714-01 예치금회수	998,511	736,153	262,358
◦ 예치금 회수	998,511	736,153	262,358
720 내부거래	5,000,000	4,000,000	1,000,000
721 전입금	5,000,000	4,000,000	1,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0	4,000,000	1,000,000
◦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0	4,000,000	1,000,000
수 입 합 계	**13,602,866**	**6,931,740**	**6,671,126**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경제산업과	13,602,866	6,931,740	6,671,126
지역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10,295,749	6,931,740	3,364,009
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	10,295,749	6,931,740	3,364,009
	균 3,281,334	균 1,983,210	1,298,124
	도 323,865	도 208,377	115,488
	시 6,690,550	시 4,740,153	1,950,397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	5,934,865	4,253,940	1,680,925
402 민간자본이전	5,934,865	4,253,940	1,680,925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934,865	4,253,940	1,680,925
◦기업투자보조금	5,934,865	4,253,940	1,680,925
지방투자촉진(기금)	2,185,884	502,800	1,683,084
	균 1,650,084	균 351,960	1,298,124
	도 160,740	도 45,252	115,488
	시 375,060	시 105,588	269,472
402 민간자본이전	2,185,884	502,800	1,683,084
	균 1,650,084	균 351,960	1,298,124
	도 160,740	도 45,252	115,488
	시 375,060	시 105,588	269,472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85,884	502,800	1,683,08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균 1,650,084	균 351,960	1,298,124
	도 160,740	도 45,252	115,488
	시 375,060	시 105,588	269,472

재무활동(경제산업과)	3,307,117	0	3,307,117
802 반환금 기타	3,307,117	0	3,307,117
01 국고 반환금	3,049,343	0	3,049,343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국비 반환금	3,049,343	0	3,049,343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8,701	0	228,701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도비 반환금	228,701	0	228,701
03 기타반환금	29,073	0	29,073
◦ 환수금 반환금	29,073	0	29,073
지 출 합 계	**13,602,866**	**6,931,740**	**6,671,126**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2021년 까지	72,123,667	30,505,510	41,417,168	200,989		70,633,406	70,633,406		1,490,261
2022년	5,703,650	5,244,856	377,697	5,044	76,053	4,631,392	4,631,392		1,072,258
2023년	5,981,602	2,206,000	3,633,400	17,350	124,852	6,567,108	6,567,108		△585,506
2024년	19,980,495	4,213,379	15,325,505	15,897	425,714	7,731,813	7,364,190	367,623	12,248,682
2025년	12,711,765	7,458,588	5,086,875	41,642	124,660	25,938,949	25,885,199	53,750	△13,227,184
2026년	12,604,355	5,000,000	3,605,199	29,613	3,969,543	13,602,866	10,295,749	3,307,117	△998,511
계	**129,105,534**	**54,628,333**	**69,445,844**	**310,535**	**4,720,822**	**129,105,534**	**125,377,044**	**3,728,49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6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6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4년도말 현재액	'25년도말 현재액ⓐ	'26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4,225,695	998,511	0	△998,511	
예치금	전북은행	14,225,695	998,511	0	△998,511	

※ 2024·202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6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 익산시 지원기준(「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

구 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이전기업	관외	본사, 연구소 (제22조2항)	•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 또는 주사무용 건물 - 취득시 취득가액의 3% 범위 - 임대시 연간임대료 3년간 50% - 시설,장비 설치비의 3% • 토지·건물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이전하여 사업 개시하고 신청	기업당 3억원 (임대료는 연간 1억)	•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제22조 1항)
		공 장 (제22조3항)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 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집단화이전 (규칙11조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상동	기업당 50억원	•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명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규칙제11조2항)
	관내	미분양부지 이 전 (제 26 조)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 투자금액 30억원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공장 전부 폐쇄(매각) & 기존 면적 증가 & 신규 고용 10% 이상(제26조 1~3항)
신설기업	관외	분 공 장 (제 23 조)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 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미분양부지 신 설 (제 26 조)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신청	기업당 50억원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제26조 1~3항)
증 설		기존부지내 증 설 (제27조1항)	• 투자금액의 2% 범위 • 기존공장등록 완료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내 1회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 등 -토지매입비 제외)	기업당 20억원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하고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 고용 (제27조 1항)
창 업		신 규 창 업 (제 28 조)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신청	기업당 20억원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제28조 3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7년이내)
대규모 투 자 기 업		공 장 이 전 신 · 증 설 (제30조 1항)	• 투자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 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100억원	•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 억원 이상 (집단화 이전 기업의 경우 2이상 기업의 합 - 규칙 11조 3항)
경매 매매		이전,신설,증설 (제 41 조)	• 투자금액의 5% 범위 •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투자금액으로 인정	해당투자 구분에따름	• 이전,신설,증설 등 보조금 요건 충족 기업

구 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전문 농공 단지	이전, 신설, 증설, 창업 특별지원 (제29조)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 이전 - 3년 이상 사업 영위 -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신,증설/ 창업 - 30억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창업은 10명) 이상
국가첨단 전략산업, IT · CT 산업	임 대 (제29조의3)	• 건물임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5년간	기업당 1억원 (연간)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 (1년 평균)
홀로그램 기업	임대/취득,신축 (제25조)	• 건물임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5년간 •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 금액 1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10%이하 범위	기업당 1억원(연간) / 기업당 50억원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 (1년 평균)
관광 산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36조)	• 투자금액의 5% • 사업계획승인·허가[관광진흥법] (승인 불필요시 건축허가[건축법]) 일부터 등록(등록 불필요 시 사용승인[건축법])하여 3년 내 1회 신청	기업당 20억원	• 투자금액 200억 이상하고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보조금 (제20조 1항)	•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50억원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제13조) - 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 - 지역특화산업(첨단업종,생명공학, 의료정밀, 기계·자동차광학기기, 식품) - 외국부품소재전용단지 입주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 1항)	•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비 · 주택구입비 등	예산의 범 위	
공통 사항 (익산시 투자보조금지원기업)	고용보조금 (제18조,제31조)	•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소득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증명) •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사업개시(건축허가) 3년 이내 신규채용(교육훈련 실시) 인원임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 제32조)	•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시행규칙 제25조)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저장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 **「보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액 최대 200억 (국비 65%) ※ 한 보조사업 당 지원한도 : 150억 기업별 지원한도: 200억 ∴2회 이상 투자 시에만 혜택 有 *고용추가지원(중소기준/설비) : 신규 고용인원이 15~20명 미만 경우(2%), 매 10명 증가 시 1%씩 상향(80명이상 최대 10%)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신청기한	➢ 입지지원 :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시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100%(전액 지급)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설비투자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내** → 착공신고 후 80%, 정산 이후 20% 지급 * 착공신고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정산신청 :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 *(※ 주차장, 보육시설 해당면적 건축비만 지원)*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 ➢ 선행투자 진행 기업: **선행투자의 정산 완료** (투자달성률 or 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 7-%미만, 금지·위반규정으로 일부환수처분받지 않아야 함.) 후에 보조금 신청 가능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강화**(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보조금 환수) ➢사업영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건물, 시설장비)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기산)로부터 **5년(의무사업 이행기간)** ➢고용규모유지 : 투자계획서상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채용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 가산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법인기업으로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 공통 : 타당성평가 60점[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1~5번) 25점]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 **수도권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신· 증설**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